

문서번호	감사담당관-12565
결재일자	2015.9.7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성북구인권센터장	감사담당관	부구청장	구청장	
왕주미	김정아	이경환	代손정수	09/07 김영배	
협 조					

**- 2015년 8월 (제30차) -성북구
인권위원회 정례회 개최결과**



**감 사 담 당 관
인 권 센 터**

2015년 8월 (제30차) 성북구 인권위원회 정례회 개최결과

■ 회의개요

- 일 시 : 2015. 8. 25.(화) 17:00~19:40
- 장 소 : 안암동주민센터(4층 회의실)
- 참석자 : 10명(김은영, 김한민, 박현숙, 배미영, 배정학, 윤성봉, 윤정섭, 이윤하, 최도용, 홍미리)
- 주요안건
 - 조례·규칙 제·개정안 8건 인권영향평가 심의
 -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

■ 회의결과

● 인권영향평가 심의 및 결정사항

- 조례·규칙 제·개정안 인권영향평가 결과 심의
 -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외 2개 조례 : 원안동의
 -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: 권고결정(28호)

인권위원회 권고 제28호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[별표 1]에 의해서 지나치게 구체적인 특정 사업명을 명시하는 방식은 주민 또는 소수자의 참여를 저해하고 기회를 박탈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, 사업 내용의 변경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완화된 사업 범위를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외 2개 조례 :
인권센터 검토 의견 동의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: 권고결정(29호)

인권위원회 권고 제29호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

상위법령인 '양성평등기본법'의 개정으로 추진 중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,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의 목적에도 불구하고, 성소수자를 제외한 '남성'과 '여성'의 권익을 위한 조례로 규정되는 것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

● **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**

- 성북인권페스티벌 기획 초안
- 1기 인권센터 시민위원 운영 및 구성 결과
- 청소년 또래 노동인권상담사 양성 교육과정
- 2015년 8기 주민인권학교 운영 계획
-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추진 계획
- 직원 인권특강 운영계획

● **다음 회의 일정** : 2015. 10. 8.(목) 15:30~18:00 (성북배움터, 구청 3층)

붙임 : 1. 제30차 인권위원회 회의자료 1부.

2. 제30차 인권위원회 회의록 1부

3. 권고 결정문(제28호)-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관한 권고 결정문 1부

4. 권고 결정문(제29호)-성평등 기본조례,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권고 권고 1부 .끝.